공주시 공고 제2026 - 1856호

「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일

공 주 시 장 (인)

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 등 규정 정비(안 제3조 ~ 제5조)
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 정비(안 제8조의 2)

○ 신청서 제출시 본인확인 서류 등 제출 규정 신설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 : 건설도시국 교통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 등

○ 제출내용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 성명 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: 공주시청 교통과(교통행정팀)

주소 :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/ 우편번호 : 32552

전화 : 041-840-8491 / FAX : 041-840-2328

4. 참고사항

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·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□ 의 견

입법예고(안)	의 견(안)	사 유

□ 의견제출자

- 성 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:
- 주 소 :
- 연락처 :

□ 기타 참고사항 :

□ 제 출 처 :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(☏ 041-840-7752)

□ 제출방법 ┌ 우편 : 충남 공주시 봉황로 1(봉황동 319) (우편번호 32552)
└ FAX : 041-840-3735

공주시 조례 제 호

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3조, 제16조 및 제16조의2"를 "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"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둔다"를 "둘 수 있다"로 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"를 "위촉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한 차례"를 "두 차례만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임시회의"를 "위원회 회의"로, "요구가 있을때"를 "요구하는 경우에"로 한다.

제8조의2제1호 중 "65세"를 "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일시적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

제9조제1항 중 "이용대상자 신청서를"을 "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상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본인 확인 서류

가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

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

나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: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가.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복지용구)

나. 그 밖의 사람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(이하 “진단기관 등”이라 한다)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

3.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3조,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
제3조(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)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(이하 “특별교통수단 등”이라 한다)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둘 수 있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 위촉한다.
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두 차례만 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.	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<삭제>
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.	② 위원회 회의---------- 요구하는 경우에 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)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	제8조의2(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) ----------.
1. 65세 이상 고령자	1.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----------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일시적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9조(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·심사)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대상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·심사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상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-----.
<신 설>	1. 본인 확인 서류 가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: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<신 설>	2.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.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

	행규칙」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복지용구) 나. 그 밖의 사람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(이하 “진단기관 등”이라 한다)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
<신 설>	3.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